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보상계획 통지 및 열람 안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7(2019.09.05.)호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78(2026.04.09.)호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추가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안내하오니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물건명세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면적)	사업기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고랑동, 팔복동 일원(656,017㎡)	2019.09. ~ 2027.06.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편입 지번(예정)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2가 529-8번지(분할 전 529-5번지)

※ 토지·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6.11.06(금) ~ '26.11.20(금)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판매팀(9층)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063-230-6451)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공영개발과 택지조성팀(별관4층) ☎063-281-8664)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lh.or.kr)
  (사업소개 → 도시조성사업 → 손실보상 → 보상공고)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판매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시기

2026. 11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보상안내문과 개별 보상금액을 통보할 예정으로 실제 보상 시기는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같은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시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서명날인	전화번호	감정평가업자	비고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서명날인은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하여야 하며(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라.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북지역본부 보상판매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라. 보상대상 조서는 본인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해드리며,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판매팀(063-230-64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